##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2 발의연월일: 2023. 5. 17.

발 의 자: 강기윤·조명희·박대수

백종헌 • 하영제 • 박성중

서병수 · 김상훈 · 최형두

정우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제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은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퍼목 신설등).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매독(梅毒)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	4
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	
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u>.</u>
가. ~ 터. (생 략)	가. ~ 터.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	5
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	
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	
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u>&lt;단서 신</u>	<u>다만, 질병관리청</u>
<u>설&gt;</u>	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
	<u> 함한다.</u>

가. (생 략)

나. 매독(梅毒)

다. ~ 저.(생 략)

6. ~ 21.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 저. (현행과 같음)

6. ~ 21. (현행과 같음)